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5,802,317	14,574,070
일반회계	415,317,021	12,459,511
특별회계	70,485,296	2,114,559
기타특별회계	70,485,296	2,114,55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811,505	594,345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39,567,864	1,187,036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15,138	15,45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247	127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230,796	6,924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543,953	136,319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5,809,472	174,284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	2,321	70

제 2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2,611,83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